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9070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07.1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17.]

피치타임

정 보 공 개 서

(주)엘에이치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04.

(주)엘에이치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가맹문의(점포개발팀): 1588-9202
대표전화 : 031)322-8855
팩스번호 : 031)335-50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별첨1]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별첨2] 거래할 품목 리스트

별첨3]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4]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 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가서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엘에이치지	피치타임 외 3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10.31	2008.10.31	최순남	031-322-8855	031)335-5020
	법인등록번호	110111-3993139	사업자등록번호	119-86-1226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최순남	피치타임 외 3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순남	031-322-8855	031)335-502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병갑	피치타임 외 3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순남	031-322-8855	031)335-502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이경애	피치타임 외 33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순남	031-322-8855	031)335-502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에이치푸드빌	홀랄라 외 35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4,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병갑	02-871-0300	02-871-1300
	법인등록번호		110111-3993139	사업자등록번호	119-86-12269
	(주)그린엔푸드	도소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588번길 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병갑	031-322-0600	031-334-7931
	법인등록번호		134511-0072683	사업자등록번호	135-81-6423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양도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안심푸드	안심치킨	2020.06.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43, 9층 901, 902호 (화정동, 은화수빌딩)	김승덕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함	(주)에이치푸드빌	청년수산	2021.12.10.	서울 서초구 효령로 394, 내제3층 1호(서초동)	김병갑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피치타임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피치타임	
상 호	피치타임 ○○점	행정구역상 읍면동 명칭 기준
상 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19-0075669 등록번호 : 40-1601329-0000
		출원번호 : 40-2020-0191829 등록번호 : 40-1834654-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324,109	2,361,699	-37,589	2,356,464	-105,908	-97,922
2022년	1,380,746	1,550,952	-170,205	2,512,165	-8,614	16,384
2023년	1,417,185	1,480,277	-63,091	2,135,434	237,558	220,86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순남	대표이사	2008.10.~2016.03.	(주)엘에이치지 이사	경영 총괄
			2016.04.~현재	(주)엘에이치지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김병갑	이사	2008.10.~2016.03.	(주)엘에이치지 대표	회사 업무 총괄
			2016.04.~현재	(주)엘에이치지 이사	경영 총괄
	이경애	감사	2008.10.~현재	(주)엘에이치지 감사	관리감독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LHG	가맹 사업 경영	2009.06. ~ 현재	맛데이(등록번호 : 20090100258)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2011.10. ~ 현재	라떼떼(등록번호 : 20110100493)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2017.12. ~ 현재	샌드리아(등록번호 : 20171503)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2019.07. ~ 현재	피치타임(구.고려통닭)(등록번호 : 20190704)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노랑김밥(등록번호 : 20200265)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청년보쌈(등록번호 : 2020021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씨티야(등록번호 : 20200254)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우스타(등록번호 : 2020025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수육신(등록번호 : 2020023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이화당(등록번호 : 20200272)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고려통닭(등록번호 : 20200266)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대한계(등록번호 : 20200271)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포센(등록번호 : 20200270)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국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더그릴썬(등록번호 : 20200264)이라는 영업표지의 서양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곱창민족(등록번호 : 20200261)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맥주민족(등록번호 : 20200263)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월쌈(등록번호 : 20200256)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국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오리니(등록번호 : 2020025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홍할매(등록번호 : 2020026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쫄삼예찬(등록번호 : 2020025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요거트미(등록번호 : 20200258)이라는 영업표지의 아이스크림/빙수사업 경영
			2020.06. ~ 현재	안심치킨(등록번호 : 20160714)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2021.05. ~ 현재	인생부엌(등록번호 : 20211238)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2021.06. ~ 현재	크로엔젤(등록번호 : 20211337)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홍개미(등록번호 : 20211394)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6. ~ 현재	롤스커피(등록번호 : 20211421)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청춘생선(등록번호 : 20214603)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어포항(등록번호 : 20214602)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바른왕(등록번호 : 20214604)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대한당(등록번호 : 2021462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곰상사(등록번호 : 20214606)이라는 영업표시의 제과제빵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롤스타(등록번호 : 20214798)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갯별담사(등록번호 : 20214799)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인생탕수(등록번호 : 20214800)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특수 관계인 (계열 회사)	(주)에이치 푸드빌	가맹 사업 경영	2008.08 ~ 현재	홀랄라(등록번호: 20080100261)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2014.07 ~ 현재	천하제일족발(등록번호: 2014068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5.06 ~ 현재	마미쿡(등록번호: 20150650)이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사업 경영
			2015.09 ~ 현재	홍춘천(등록번호: 2015093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7.12 ~ 현재	부대장(등록번호: 2017150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8.02 ~ 현재	종로냄비(등록번호: 20180175)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홍안동(등록번호: 20180170)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2018.02 ~ 현재	홍대마녀(등록번호: 20180207)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2019.04 ~ 현재	인애플피자(등록번호: 20190354)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2019.04 ~ 현재	마크빈(등록번호: 20190355)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베콩(등록번호: 20200309)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굽닭(등록번호: 20200300)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돈까스청춘(등록번호: 20200296)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미스터포차(등록번호: 20200298)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애플틴(등록번호: 20200301)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조선비빔(등록번호: 2020029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조선푸줏간(등록번호: 2020030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짜짜왕(등록번호: 20200306)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경성뼈대(등록번호: 2020029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코링(등록번호: 20200302)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해적면(등록번호: 20200307)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황짬(등록번호: 2020030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후레쉬영(등록번호: 20200308)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도소매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커피아트(등록번호: 20200304)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젤라빈스(등록번호: 20211880)라는 영업표지의 아이스크림/빙수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팔도독(등록번호: 20211881)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바다민족(등록번호: 20213383)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빈앤코코(등록번호: 20213388)이라는 영업표지의 카페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어부야시장(등록번호 : 20213389)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어부장터(등록번호: 20213386)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오징어네(등록번호: 20213385)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천일애(등록번호: 2021338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청년스시(등록번호: 20213384)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2021.10. ~ 현재	청년수산(등록번호 : 20214607)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차이쿵(등록번호 : 20213390)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임	만왕(등록번호 : 20213391)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2020.10.13. 출원 2022.01.04. 등록	출원 : 40-2019-0075669 등록 : 40-1601329-0000	(주)엘에이치지	2032.02.17.
	상표	2019.05.16. 출원 2020.04.29. 등록	출원 : 40-2020-0191829 등록 : 40-1834654-0000	최순남	2030.04.2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피치타임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9년 07월 16일

2. 피치타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엘에이치지	고려통닭	최순남	2019.07.16. ~2022.01.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주)엘에이치지	피치타임	최순남	2022.02.01.~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1588번길 1. C동

3. 피치타임 업종

영업표지	업종	
피치타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구.고려통닭)	치킨	치킨, 피자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피치타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2	-	3	3	-	11	11	-
서울	-	-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	-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	2	2	-	5	5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1	1	-
전남	-	-	-	-	-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피치타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	-	4	-	-	2
2022	2	2	1	-	-	3
2023	3	8	-	-	1	11

6. 피치타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피치타임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 맹 본 부	(주)엘에이치지	맛데이	20090100258	치킨	6/0	6/0	6/0
		라떼떼	20110100493	커피	21/0	12/0	12/0
		샌드리아	20171503	기타외식	53/0	48/0	43/0
		피치타임 (구.고려통닭)	20190704	치킨	2/0	3/0	11/0
		노랑김밥	20200265	분식	-	-	-
		청년보쌈	20200210	한식	-	-	-
		씨티야	20200254	커피	-	-	-
		우스타	20200259	한식	-	-	-
		수육신	20200238	한식	-	-	-
		이화당	20200272	제과제빵	-	-	-
		강정천하	20200266	치킨	-	-	-
		정손식당	20200271	한식	-	-	-
		포센	20200270	기타외국식	-	-	-
		더그릴썬	20200264	서양식	-	-	-
		곱창민족	20200261	한식	-	-	-
		맥주민족	20200263	주점	-	-	-
		월쌈	20200256	기타외국식	-	-	-
		오리니	20200257	한식	-	-	-
		홍할매	20200260	한식	-	-	-
		요거트미	20200258	아이스크림/빙수	-	-	-
		쫄삼예찬	20200255	한식	-	-	-
		안심치킨	20160714	치킨	20/0	10/0	8/0
		인생부엌	20211238	기타외식	2/0	1/0	1/0
		크로엔젤	20211337	제과제빵	7/0	12/0	15/0
		홍개미	20211394	한식	-	-	-
		롤스커피	20211421	커피	2/0	4/0	6/0
		청춘생선	20214603	일식	-	-	-
		어포항	20214602	일식	-	-	-
		바른왕	20214604	분식	-	-	-
		대한당	20214628	한식	-	-	-
		곰상사	20214606	제빵제과	-	-	-
		롤스타	20214798	제빵제과	-	-	-
		갯벌탐사	20214799	주점	-	-	-
		인생탕수	20214800	중식	-	-	-
특 수 관 계 인	(주)에이치 푸드빌	홀랄라	20080100261	치킨	225/0	236/0	270/0
		천하제일족발	20140689	한식	3/0	2/0	-
		마미쿱	20150650	패스트푸드	23/0	22/0	15/0
		홍춘천	20150939	한식	96/0	80/0	66/0
		부대장	20171502	한식	12/0	7/0	7/0

(계열회사)		종로냄비	20180175	기타외식	2/0	2/0	1/0
		홍안동	20180170	치킨	-	-	-
		홍대마녀	20180207	분식	3/0	3/0	2/0
		인애플피자	20190354	피자	2/0	2/0	2/0
		마크빈	20190355	제과제빵	12/0	10/0	8/0
		베콩	20200309	커피	-	-	-
		경성뼈대	20200297	한식	-	-	-
		곱담	20200300	기타외식	-	-	-
		돈까스청춘	20200296	기타외식	-	-	-
		미스터포차	20200298	주점	-	-	-
		애플틴	20200301	피자	-	-	-
		조선비빔	20200299	한식	-	-	-
		조선푸줏간	20200303	한식	-	-	-
		짜짜왕	20200306	중식	-	-	-
		커피아트	20200304	커피	-	-	-
		코링	20200302	커피	-	-	-
		해적면	20200307	한식	-	-	-
		황짬	20200305	한식	-	-	-
		후레쉬영	20200308	기타도소매	-	-	-
		젤라빈스	20211880	아이스크림/빙수	-	-	-
		팔도독	20211881	제과제빵	-	-	-
		바다민족	20213383	일식	-	-	-
		빈앤코코	20213388	카페	-	-	-
		어부야시장	20213389	일식	-	-	-
		어부장터	20213386	일식	-	-	-
		오징어네	20213385	일식	-	-	-
		천일애	20213387	한식	-	-	-
		청년스시	20213384	일식	-	-	-
		청년수산	20214607	일식	1/0	2/0	8/0
		차이쿡	20213390	중식	-	-	-
		만왕	20213391	분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피치타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1	357,234	25,889	755,399	61,551	125,462	4,140	총 7개 가맹점 산정 매출액 추정불가 1곳 제외, 6개월미만3곳 제외
서울	1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5	439,732	43,831	755,399	61,551	192,172	22,552	5곳 미만. 추정불가 1곳 제외, 6개월 미만 1곳 제외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1) 영업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45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다음의 서식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액=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추정비율2.2×배달예상매출액35%)
- 2)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운영점포를 기준하여 매출액 산정을 하였습니다.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	33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별도의 지역 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본 내역은 당사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지출한 총 비용으로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다른 가맹사업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42,626	 (비공개)	-	
광고	소계	 (비공개)	296,589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소계	 (비공개)	46,037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으로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엘에이치지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소요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IV-1-3]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가 위표의 보험인과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험 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가맹희망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피보험자인 가맹사업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피보험자인 가맹점사업자가 보험 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5)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예치가맹금 반환요구 및 보험계약자의 서면 확인 시 보상 처리됨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피치타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별도공사(철거공사, 냉·난방기 공사, 전기증설, 소방 공사 등),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4,3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일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개점 전 : 제공서비스(교육 및 정보제공 대가)의 비용 및 영업 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 개점 후 :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3,3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즉시	- 물품대금 미지급, 가맹본부 공급 물품 파손 등 -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 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등의 의무)의 미이행	약속어음 발행으로 대체 가능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 부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미납액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 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 정산 후 잔액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 및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300
가입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0,251	683			15평(49.5㎡) 빈 점포 기준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본부	1,606	107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 취소	실제 공사 시 브랜드, 건물형태, 면적, 현장상황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2,145	143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 취소	브랜드, 건물형태, 면적, 현장상황, 품목 및 수량 등에 따라 상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협력업체	6,500	433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브랜드, 매장 면적, 품목 및 수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철거공사, 소방시설, 화장실공 사, 외부인테리어공사, 외부테라 스공사, 폴딩 도어, 전기공사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외부 인테리어 및 내부 옵션공사, 철거공사, 냉·난방기공사, 전기증설, 소방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의 입지 선정에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 선정의 최종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귀하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을 권유함. 2) 귀하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합니다. ※ 승인기준 - 기존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 점포의 전용면적 - 가시성 및 접근성 - 주변의 상권 및 음식점의 분포 - 물류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피치타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165	매월 15일		소멸성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분담금		해당 없음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협력업체	판매가의 9.9%	다음달 말일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개시 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 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 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체, 보수 2일 전	교체, 보수 전	교체, 보수 후 반환 불가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 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 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	다음 월 5일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상표사용료(로열티)의 대가 내역 :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지역 보호,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경영지도,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가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관리	- 정기 방문 - 품질, 위생, 서비스 점검 - 월 가맹점 매출 및 손익분석 - 매장 전반 위생 상태 점검 - 인테리어·기기 A/S 접수 및 처리	정기/수시	문의: 교육팀 (031-322-8855)
클레임 처리	- 고객 클레임 접수 및 처리 -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상태 점검	수시	
슈퍼바이저	- 가맹점 전반 환경, 위생 점검 - 가맹본부 정책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확인	정기/수시	
현장코칭	- 매장 환경, 서비스 실태 점검 - 가맹점 맞춤형 서비스 코칭 진행	정기/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피치타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개점에 필요한 교육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운영권을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교육비와 가입비는 면제되며 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 가족의 허용범위는 양도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3]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간판,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설비와 메뉴판 등을 철거하고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무상대여 품목 등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는 위의 원상회복의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후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액을 상환합니다.
- ④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인 당사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 또는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관련된 사항(매장 전화번호 및 안내문구), 인터넷상의 브랜드 명칭 사용 등 제반 영업표지 등을 표상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즉시 가맹본부인 당사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사실을 입증하는 제반 증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제2항의 철거 비용은 본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1일당 금 삼십만 원(W3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피치타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귀하가 피치타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주)그린엔푸드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피치타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피치타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2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 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함	1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다른 가맹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2		개별공문 발송 및 POS 공지	2023.12월 기준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권장 판매가격을 가맹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설정된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호프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피치타임 (구.고려통닭) 맛데이 안심치킨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설정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구역(지도) 표시
설정기준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 ② 도로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 ③ 배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상권일 경우 인근 주요시설 및 집객력 수준에 따라 범위

	설정. ④ 단, 가맹본부가 판단하는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대학병원, 대학교, 문화체육시설, 지하상가, 군부대, 지하철 및 철도 역사, 휴게소, 놀이동산, 관광지, 리조트(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 등은 위 설정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

※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향후 개설 예정지)을 ‘미 개설지역’이라 정의하며, ‘미 개설지역’에 대한 신규 가맹점 개설 등의 권한은 당사의 고유권한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바,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행위	별지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 내용	영업지역이 침해된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및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
예외적 허용 요건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하고 ② 영업지역이 침해된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광고 선전비 등 일정한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반시 책임	① 1회 위반 서면경고 또는 확인서 작성 후 미이행시 물품공급 중단 영업정지 10일 ② 2회 위반 서면경고 또는 확인서 작성 후 미이행시 물품공급 중단 영업정지 20일 ③ 3회 위반

	서면경고 또는 확인서 작성 후 물품공급 중단 영업정지 30일 또는 계약 해지 및 위약벌 1억원
--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피치타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영업지역은 가맹점 난립을 지양하고 고유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소모성 과열경쟁을 피하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상품의 질적 향상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당사의 정책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의 홍보활동 및 영업지역 침범행위는 금지되며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피치타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5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대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제36조 1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원·부재료 등의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 제29조 1항
2.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전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하에 변경할 때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입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 및 관리감독비 등 가맹본부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변경,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부여한 매장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로열티 및 상품의 대금 결제를 지체하거나 미지급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12.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점매입한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이 가맹본부가 정한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기준(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필수 품목의 미주문 등)을 위반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농작물 계약 및 계약재배에 따른 야채 일괄 공급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그 외의 상품 판매 및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가격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조리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새로운 메뉴, 상품, 제품의 조리, 홍보, 판매 등) 및 관리 감독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및 온라인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 활동(마케팅 홍보 및 배달 앱 운영 방침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 CCTV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24.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산정을 위한 매출 보고 시 고의 누락, 허위 보고하거나 지체한 경우	
25.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거점지역으로 설정된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지역을 침범한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판촉비용 등 일정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할 경우	
2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 및 영업시간, 일수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대로 휴업한 경우	
28.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과실, 상품의하자, 점포의 화재 등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이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9. 가맹점사업자가 해충으로 인한 가맹점 이용 고객이나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충바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 기타 본 계약상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①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의 수정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전 고지 또는 교육을 진행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법무팀

- ② 양수인은 잔여계약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명의변경 절차에 준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명의변경 절차에 준함	
대리경영	불가능	-	-	
위탁경영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피치타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치킨호프를 판매하는 업종 동일 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피치타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4:00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가맹점 휴무시 운영팀과 협의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③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귀하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환경 및 근무자 위생	담당자 매장 방문→위생, 청결상태 등 관리 항목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방문	문의 가맹관리 팀
기기장비			
식품위생			
서비스 및 레시피			
기타(매장 비치 서류) 등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품질관리	조리매뉴얼과 레시피 준수 여부 및 주요 식자재 품목의 선입선출,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 확인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피치타임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 가맹점사업자 분담금 산정 →1개월 전 분담금 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 가맹본부가 100% 부담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진행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판촉행사	할인증정행사	총 판촉비의 20%	총 판촉비의 80%	
	기타 개별 행사	총 판촉비의 0%	총 판촉비의 100%	
전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할인금액 본사 부담 무료상품권의 경우 전액 본사 부담	수수료	
	프로모션용 무료 상품권			
멤버십 서비스	개발/유지보수/ 라이선스	100%	0%	
	프로모션 쿠폰	20%	80%	
	적립 서비스	0%	10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청구할 수 있는 예정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매출 제출시 : [직전분기 6개월간의 평균 일 매출액 × 계약 잔여 영업일수 × 50%]
② 일매출 미제출시 : [직전분기 3개점의 평균 일 매출액 × 계약 잔여 영업일수]
- 2) 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점사업자가 IV. 3. 4)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1일당 금 삼십만 원(W3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가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 기간 내 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를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교부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입점 후보지 상권 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보증보험증권 발행	D-35~34	
가맹금 납입	- 가맹금 납입	D-33~26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인테리어 계약 체결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1~6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기기장비 조작 - POS 조작 - 서비스 - 물류시스템 - 조리 교육	D-20~10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 원 및 점주 체크 - 가오픈	D-2~1	
개점	- 오픈 행사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49.5㎡(15평)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패밀리 가맹점주 캠퍼스 희망기금	가맹점주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전국 가맹점주	해당 기금지원 공고 (연1회)	
가입비 할인	기존 가맹점 소개, 운영경험 등에 따른 우대 할인	기존 가맹점 등의 소개나 운영경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개점시	가입비의 10~50% 할인
우수가맹점 지원	가맹점 매출 증가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물품 지원 등	-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중에 한함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홍보물 지원	매년 전체 가맹점의 포스터 및 신메뉴판, 배너 등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비용 또는 물품 지원
신메뉴 판매활성화 지원	시즌별 신메뉴 등 고객 프로모션 촉진 이벤트 지원		신제품 출시시	
판매활성화 지원	고객 대상 판매 촉진 이벤트 지원		수시	
판촉물 제작 지원	시즌 행사 등 고객 프로모션 지원		가맹계약기간	
SNS 이벤트 판촉 지원				
고객참여 문화행사 지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경영 지원 팀
가맹 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 업자 부담	문의: 경영 지원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마케팅 특별투자지원	창업시 마케팅 특별투자 지원	마케팅 및 배달앱 일정기간 유지시	1년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원 매장 중 대상 매장 선정
1+1 마케팅 전략	매장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제휴 마케팅 신청시	1회 ~ 최대 1년	마케팅 비용의 50% 지원	
배달앱 1+1 전략	배달서비스 이용을 위한 배달앱 신청비용 지원	미배달 매장 배달앱 신청시	최대 1년	배달앱 2개 신청시 1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피치타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실습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전 메뉴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이론	- QCS 관리(식품위생과 품질관리 교육) - 친절 서비스 교육 - 점포 운영 규칙 교육 - 배달 교육 - POS 교육 및 기초 세무에 대한 이해 등	이론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실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수시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전 메뉴의 조리실습 계약갱신 시	이론교육 실습교육	- 고객 클레임 다수 발생 시 - 계약갱신 시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피치타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3,300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보수 교육	보수 교육 운영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특별 교육	특별 교육 운영시 별도 책정		평가 기준에 따라 필수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귀하가 기한 내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가 받지 아니하고 운영자가 대신 이수하여도 귀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 또는 운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법무팀(031-322-88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hoolala.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치즈피자 M	16,900	분기별 공지	2023년 12월 기준
치즈피자 L	19,900		
이태리 고르곤졸라 피자 M	16,900		
이태리 고르곤졸라 피자 L	19,900		
더블 페퍼로니 피자 M	17,900		
더블 페퍼로니 피자 L	20,900		
선샤인 콤비네이션 피자 M	17,900		
선샤인 콤비네이션 피자 L	20,900		
스윗 고구마 피자 M	18,900		
스윗 고구마 피자 L	21,900		
리얼 불고기 피자 M	18,900		
리얼 불고기 피자 L	21,900		
트리플 베이컨 감자 피자 M	18,900		
트리플 베이컨 감자 피자 L	21,900		
몬스터 소세지 피자 M	18,900		
몬스터 소세지 피자 L	21,900		
하와이안 몬스터 피자 M	20,900		
하와이안 몬스터 피자 L	23,900		
쉬림프 캐나다인 피자 M	20,900		
쉬림프 캐나다인 피자 L	23,900		
메가반반 피자 M	20,900		
메가반반 피자 L	23,900		
후라이드	16,900		
양념치킨	18,900		
간장치킨	18,900		
마늘킹치킨	18,900		
2피자 1치킨 3가지 SET	34,900		
1피자 1치킨 2가지 SET	24,900		
피+치+떡 SET	32,900		
국물떡볶이	9,000		
로제스파게티	7,000		
크림스파게티	7,000		
치즈오븐스파게티	5,500		
미니핫도그(3개)	4,000		
치즈스틱(3개)	3,000		
눈꽃치즈감자	7,000		
뿌링치즈볼(5개)	5,000		
버팔로잉(3개)	3,500		
콜라/사이다 500ml	2,000		
콜라/사이다 1.25L	3,000		

위 표기상품과 다른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회 위반 : 문자경고

2회 위반 : 서면 경고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가맹점 사업자가 표기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승인 없이 표기 이외의 상품판매 시엔 손해배상은 물론 가맹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시장가격 폭등 등, 경영환경 변화가 심할 경우 표기 상품, 권장가격 등의 내용을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POS, 공문, 기타의 방법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엘에이치지	영업표지	안심치킨
가맹 희망자	(서명)	전화번호	
주소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제공받은 장소	
수령확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수령했습니다.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서명)